

제 576 호

1976.10.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 - 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607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3
제 1608 호	서울특별시 의례식장등 영업허가 사무취급규칙	3
제 1609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규칙	6
◎ 훈 령		
제 461 호	서울특별시 공문서보관, 보존등에 관한규정	33
◎ 고 시		
제 2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지적승인	67
제 253 호	동청사 위치변경	67
제 254 호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68
제 25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68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56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지적승인	74
제 257 호	1976 년도 제 3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	75
제 25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76
제 259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적승인	77
제 260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77
제 261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 계획인가	78
제 26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지적 일부 변경승인	82

◎ 공 고

제 23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3
제 235 호	신림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84
제 23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91
제 23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94
제 239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96
제 240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96
제 241 호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 공고	97
제 사 령		97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0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07 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인사과"란 제 4 호 다음에
제 5 호를 "사회과"란 제 7 호 다음에
제 8 호 내지 제 12 호를 "상정과"
란 제 13 호 다음에 제 14 호 내지
제 15 호를 "도시가스과"란 제 6 호
다음에 제 7 호 내지 제 17 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례식장등 영업허가사무
취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0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08 호

서울특별시의례식장등영업허
가사무취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중 영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설기준) ① 규칙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예식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신랑신부의 대기실면적은 각각
1명이상이어야 한다.

2. 식장마다 좌석의 20/100 에
해당하는 대기실을 확보할 것

② 규칙제 2 조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
에 의한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상 주택지역
상가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회하는
장소로부터 0.5 키로미터 떨어져야
한다.

2. 식장마다 출입문을 복도에 접한

< 별 표 >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 임 기 관	근 거 및 적 용 법 규
인사과	5. 기관별 과정원 책정권	내부위임	2급이상단위기관장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 3 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 3 조
사회과	8.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 9. 사회복지시설폐지 사업 정지승인 신청 10. 사회복지시설의명칭 시설 장사업목적변경허가 신청 11. 사회복지시설소재지 변경허가 신청 12.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 신청 (단, 사업범위가 2개 도이상인 법인제외)	" " " " "	구. 출장소장 " " " "	○ 사회복지사업법제 22조, 동법시행규칙제 13조 ○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 "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14 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1 조
상정과	14. 계량기수리 업소시설점검 15. 주유기 수시검사	" "	" "	○ 계량법 제 30 조

0950

도 시	7. 가스시공업자의 승인	내부위임	도시가스사업소	○ 가스공급조례 제 5 조, 제 28 조의 2
가스과	8. 가스시공업자의 시공비 기준액 고시	"	"	○ " "
	9. 시공업자의 업무구역의 제한 및 시공업자에 구 역별 정원조사	"	"	○ 도시가스 공급조례 제 28 조의 2 동조 표시행규칙 제 6 조
	10. 가스공급장치 등의 위치 변경 명령	"	"	○ 가스공급조례 제 10 조, 제 28 조의 2
	11. 제반신고	"	"	○ 가스공급조례 제 11 조, 제 28 조의 2
	12. 가스미터의 보호관리	"	"	○ 가스공급조례 제 13 조의 2, 제 28 조의 2
	13. 가스공급의 제한 또는 정지	"	"	○ 가스공급조례 제 15 조, 제 28 조의 2
	14. 공급의 중지 또는 폐지 철회	"	"	○ 가스공급조례 제 16 조, 제 28 조의 2
	15. 사용가스의 질량	"	"	○ 가스공급조례 제 19 조, 제 28 조의 2
	16. 가스미터고장시 사용량 조정 및 납기와 징수방법	"	"	○ 가스공급조례 제 20 조, 제 21 조, 제 28 조의 2
	17. 요금계산의 정정 이의 신청	"	"	○ 가스공급조례 제 25 조, 제 28 조, 제 28 조의 2

제 576 호

시
보

1976.10.5 103-5

측에 2개이상 전후에 설치하여 야 한다.

3. 식장에 시체안치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납골설치를 하여 안치실내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소독기와 소독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규칙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사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대에 필요한 물품의 진열에 소요되는 면적 5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의물품 및 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소독기와 소독약을 갖추어야 한다.

④규칙제 2조 제 4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내에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상담실과 남,녀 상면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서울특별시에규 278 호(74.10.11)호로 시행중에 있는 의례식장등 영업허가 사무취급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0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09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 58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일하고 운전면허 사무처리의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허시험 실시계획) ①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면허시험시설, 응시상황, 운전자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시설과 관리능력등을 고려하여 면허종별 및 구분별로 조정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출장면허시험의 억제) ①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출장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험장에 규칙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된 각 호오스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 2 장 면허시험의 시행준비

제 4 조 (응시원서 및 접수절차) ①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는 (이하 "응

시원서"라 한다)서울특별시 경찰국교통과 면허계에서 접수한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관할 주소지 여부
3. 신체검사서에 운전자로서의 적부
4. 주민등록증상의 기재사항 및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대조
5. 첨부서류의 적부
6. 따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진입 조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군의 소정교육을 필하고 특수자동차(추레라등)에 대한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정의 제출서류 이외에 "군운전병자격기록표사본"(부대장이 확인한 복사본)을 첨부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 5 조 (다른 면허를 받고자하는자의 응시) ①운전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종별 및 구분이 다른 면허를 받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응시원서의 확인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 1종 대형면허시험응시자는 규칙제 23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보관되어 있는 면허대장에의거 운전경력을 확인할수 있는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응시원서확인란의 확인은 면허대장과 면허증을 대조하여 면허담당 간부가 이를 확인한다.

③제 1항에 의거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사전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자의 응시)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7 조 제 3 호에 의한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다리의 길고 짧음 (절음발이) 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운전자로서 제동조작에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세끼손가락하나 손가락마디 하나

가 절단된 상태 또는 손가락끝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자동차 운전상 지장유무

3. 꺾추라 할지라도 정도가 가벼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운전상 지장유무

제 7 조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예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 49 조에 정하여진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여행사실은 출국 또는 입국 등을 내용으로 기재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있는자
2. 재해사실은 화재 또는 수해의 발생후 사회관례상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된사실을 내용으로한 시, 읍면동장 발행의 사실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실은 기동불능의 증상이어야만하고 공인된 병원발행의 의사진단서 또는 관할경찰서장의 조부확인된 자

103-8

이거나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한 사실을 내용으로하는 시, 읍면동장 발행의 사실증명서를 소지한 자

4.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신체외 자유가 구속되었던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석방된것을 내용으로한 사실증명(처분결과통지서)이 있는 자이거나 현역군인 또는 국속인사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군속으로서 복무한 사실을 내용으로한 소속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

5. 사회관습상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임무로 인한 사실은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용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소속기관장 발행의 확인서,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한 채직회사 또는 사회단체(등록기관에 등록된 회사나 단체에 한함)의 장이 발행한 확인서, 직계존비속의 기복으로

부득이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으로한 시, 읍면동장 발행의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 3 장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①운전면허시험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국 보안과장 또는 교통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1. 공업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기계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자동차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육에 종사한 자로서 지정 자동차교습소의 교사가 아닌 자
2. 도로운송차량법 제 62 조에 의한 자동차 검사원
3. 자동차교통에 관한 업무에 능통

<p>한 경위급이상의 경찰 공무원</p> <p>4. 위원장이 법령 및 구조 취급 방법에 관하여 권위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제 9 조 (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p> <p>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 10 조 (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기타 면허시험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 <p>②위원은 면허시험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면허시험에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4 장 면허시험</p> <p>제 11 조 (필기시험문제의 출제범위 및 배점) ①규칙 제 28 조 및 제 29 조에 규정된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25문제를 출제하되 그 출제수준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누구든지 알기쉬운 내용으로 표현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출제는 객관식으로 하되 1 문제당 배점과 설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는 선택형으로 하되 그 배점은 1 문제당 4점으로 한다. 2. 1 문제당 설문은 4 문턱일로 하고 그 부호는 갑, 을, 병, 정으로 한다. <p>③특수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규칙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25 문제를 출제한다.</p> <p>제 12 조 (필기시험문제의 관리) ①규칙 제 28 조에 규정된 필기시험 문제는 과목별로 1,000문제 이상을 출제하되, 1 문제 1매의 카야드제로 하여</p>
---	---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출제구분별로 분류하여 문제은행식 방법으로 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이 보관 관리한다.

②위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필기시험문제를 매 3 월마다 4 분의 1 이상을 대체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문제카드 (법령) 는 별지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구조 및 취급방법은 별지제 2 호 서식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규칙제 29 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면허종별 및 구분별로 보관된 필기시험 문제카드에 표시된 난해도를 감안하여 발췌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난해도 표시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제가 극히 어렵다는 에이(A)
- 2. 문제가 어렵다는 비이(B)
- 3. 문제가 보통이라는 씨이(C)
- 4. 문제가 쉽다는 디이(D)

⑤제 4 항의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 전날 위원장이 지명한 경찰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 면허시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 이라한다) 입회하에 과목별로 3 종이 상을 편집하여 등사원지에 필경후 봉인 관리한다.

⑥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로 하여금 봉인된 원지봉투를 선택케하여 현장에서 개봉 응시인원수대로 등사배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필기시험의 소요시간) 필기시험의 소요시간은 영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과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60 분으로 한다.

제 14 조 (필기시험의 답안용지) ①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따로 작성한다.

② 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안용지는 별지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동채점기의 답안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 1 항의 답안용지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면허시험위원회위원 (이하 "위원" 이라한다)

1 인과 당해 필기시험 감독관 1 인 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필기시험 감독관의 선임과 임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감독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면허시험 시행 담당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2. 필기시험 감독관으로 과거 면허시험 감독상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

② 필기시험 감독관은 필기시험시행 12 시간전에 선임하고 선임된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작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기시험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답안지 작성요령과 주의사항 주지
- 2. 면허시험장내의 질서유지
- 3. 응시자의 대리시험 여부확인
- 4.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확인과 배부 및 회수
- 5. 답안용지에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면서 감독관 날인

6. 필기시험 종료후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

7. 답안지를 회수한후 감독관 2 인과 응시자 2 인이 봉합하여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자 입회하에 즉석 채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동채점기에 의하여 채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필기시험 채점관의 선임과 임무) ① 위원장은 제 12 조 제 1 항 규정에 준하여 필기시험 채점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채점기에 의한 채점은 기계조작상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이 전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필기시험 채점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시험 종료후 즉시 현장에서 행한다.
- 2.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적색 오일연필로 하며 채점 착오에 대한 정정은 그 정정부분에 채점

관이 실인을 낳인하므로서 행한다

3. 필기시험 채점관은 채점한 답안지에 한하여 채점관인을 낳인하여 채점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필기시험 채점관은 별지제 5호 서식에 의한 채점관 선일부에 채점한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매수를 기록한다.

제 17 조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①채점은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하여 모범답안을 " 답안용지 " 에 천공 (펀치) 하여 응시자의 답안지위에 대고 나타난 정답수를 계산 채점한다. 다만, 자동채점기에 의한 채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1. 응시번호나 성명을 기재치 않은 것

2. 답안지에 제 11조 제 3항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감독관의 날인이 없는 것

3. 1문에 2개이상의 해답을 표시

한것

③채점사는 응시자중 두사람이상을 선정하여 입회시킨 가운데 채점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채점한 답안지를 감안한 후 합격, 불합격을 현장에서 판정 발표하고 이를 면허시험 관리관으로 하여금 종합성적표에 이기 시킨다.

제 18 조 (기능시험) ①기능시험은

규칙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되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시험 (이하 " 호오스시험 " 이라 한다) 은 굴절호스, 곡선호스, 방향전환 호스 순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 1종 대형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규칙제 33 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굴절호스 및 곡선호스의 전진과 방향 전환호오스의 전후진으로 한다.

③규칙 제 33 조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제 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 라 " 형 호스중 굴절호스 및 곡선 호스의 전진으로 하되 그 호오스의 폭은 75 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호스는 황색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폭 10 센치미터의 구획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④제 14 조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필기시험 종료 즉시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기능시험 입회관의 선임 및 임무)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능시험 입회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면허시험을 주관하지 아니하는 타부서의 경찰공무원 2명 이상
- 2. 동일인으로서 계속 기능시험 입회관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②제 1 항의 기능시험 입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시험장에서 기능시험관의 기능 시험 판정상황을 매호스별로 확인한다.
- 2. 기능시험의 오판여부를 재확인 하고 매호스별로 기능시험 채점표에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3. 기능시험 입회관은 별지제 4 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별지제 6 호 서식에 의한

기능시험 입회관 명부에 기능시험 입회 판정확인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능시험의 판정) ①규칙제 36 조 제 1 항에 의한 기능시험 채점표 용지는 기능시험 시행전에 응시자에게 배부하여 기능시험 현장에서 시험직전에 응시표와 같이 기능시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결과에 대한 다툼이 없게하기 위하여 차순의 응시자 2명 이상을 근접 참관시켜 보다 공정성을 도모한다. 다만, 자동신호 채점기에 의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기능시험이 끝난후에는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호칭 발표하고 기능시험 채점표에는 별표 1에 의한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기능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응시표 이면에 합격자는 청색, 불합격자는 적색으로된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기능시험관은 첨부한 일일기능시험

실시경과 보고서 및 기능시험 판정결과를 이기한 종합성적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채점표에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정 확인인을 일부인오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시험관리 전담반의 선임과 임무) ①면허시험관리 전담반 및 보조원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임 담당케 한다.

②면허시험관리 전담관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일체의 면허시험에 관한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제 22 조 (군차량 운전경험자에 대한 면허시험) 법제 59 조 제 1 항제 4 호 및 영제 48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에 의한 시험은 지정의사의 신체검사서와 지각반응 시험만을 실시하되 응시원서 구비서류의 적부를 확인한후 접수 당일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의 면허시험) ①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가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성시험만 실시한다.

②제 1 항의 기간 계산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실시일로 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적성검사 미필자의 면허시험(적성시험) 실시결과 합격된자에 대한 운전면허번호의 부여는 면허교부대장 일련번호 순서에 의거 신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 (편철순서) ①운전면허시험 관계서류는 면허종별 구분별로 응시번호 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편철한다.

1. 운전면허 응시원서
2. 기타 응시상 필요한 제증명 서류
3. 필기시험 답안지
4.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 채점표

②제 1 항의 서류는 70 명분을 한책으로 편철한다.

제 5 장 운전면허증발급 및 관리

제 25 조 (운전면허번호등 부여) ①규칙

제 25 조에 규정한 운전면허 번호는 시도별 분류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10 만단위로 한다.

예시 : 서울 1-000001-000002

②운전면허 교부번호는 규칙제 51 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교부대장의 일련번호로 하여 운전면허의 구분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 26 조 (면허증의 규격등) ①면허증은

영제 39 조에 의한 서식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작성하여 면허증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을 압축시에 외피와 내지가 밀착되도록 특수 가공한 합성지로 조제한다.
2. 면허증 외피는 일정도안의 자인이 چاپ된 특수제품으로서 시장에서 용이하게 제작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내지나 외피는 수증에서도 변

화, 오손되지않고 장기보존이 가능한 합성지로 조제한다.

제 27 조 (면허증의 발급관리) ①면허증

을 발급할때에는 면허증별로 규칙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면허번호는 동일한 번호를 이중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취소 및 타시도 진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면허증은 이중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면허증이 오손, 분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재교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면허를 받은자에게 면허종별 및 구분이 다른 면허를 다시 교부하고자 할때 또는 오손, 분실, 도난등 사유로 재교부할 때에도 면허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⑤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면허종별의 변경으로 면허증 갱신교부를 하였을때에는 당해자의 운전면허 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발급관리) (1)법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표면좌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붙출판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29 조 (운전면허증의 교부대장) 규칙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교부대장은 운전면허 구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30 조 (운전면허대장등의 비치) (1)영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대장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1 . 운전면허대장 - 경찰국
- 2 . 운전면허사본대장 - 경찰서

다만, 운전면허사무를 경찰국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에는 사본대장등 경찰국에서 일괄 비치한다.

3 . 운전면허대장원부 - 경찰국
(2)규칙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성명별 카아드는 경찰국에서 작성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 31 조 (운전면허증 및 면허대장등의 작성) (1)운전면허증 및 면허대장등에 기록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년월일은 년도에 10 단위 숫자만 기록하되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록은 한글타자기로 하고 면허대장등 기타의 기록은 청색 또는 흑색 "펜"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면허증의 교부일은 실제로 교부한 일자로 기재하고 면허대장의 교부일자도 면허증에 기재한 일자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은 적성검사를 받은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3 년이 되는 날로 기재한다.

(4)면허증의 발급 년월일은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면허종별은 제 1 종 면허는 " 1 " , 제 2 종 면허는 " 2 " 숫자만 기록한다.

(5)면허대장 및 면허대장원부의 교부 번호는 면허구분별로 작성 비치된 면허증 교부대장의 교부번호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6)면허증 및 면허대장의 기재사항란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등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7)면허증 발급시는 기재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발급근거를 청색으로 명시하고 하단 여백에는 차기 적성검사 수검일 (검사유효기간부터 3월이 되는날) 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교부한다.

- 1. 교습소 졸업자는 "○○교습소"
- 2. 일반은 "일반면허"
- 3. 군차량 운전경험자는 "군차량운전경험자"
- 4.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자가 1년이내에 응시 교부한자는 "적성발급"

제 6 장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제 32 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구분)

(1)면허대장 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성명의 변경
- 2. 주소지의 변경 (타시도 전출입에 한함)

(2)운전면허증 기재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면허종별 및 구분의 변경과 발급근거
- 2.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3)운전면허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 2 항에 규정된 기재사항
- 2. 적성검사 및 서관교부사항
- 3. 행정처분 사형중 면허정지처분 및 사고기록

(4)운전면허 사본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 3 항에 규정된 기재사항
- 2. 접수제 행정처분사항

제 33 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확인)

면허증 및 면허대장등의 모든 기재사항은 담당자가 기재한 후 면허사

<p>무 담당간부의 실인으로서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p> <p>제 34 조 (행정처분의 집행) (1)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 결정은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서로서 시행하여야 한다.</p> <p>다만, 일일 행정처분 건수의 과다로 별지 제 8 호 서식의 결정서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 9 호 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동제 결재 하므로써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p> <p>(2)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취소) 통지서 (규칙 별지 제 28 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다만,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제 8 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나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취소처분의 사유를 열람 확인케 하고 면허대장에 확인 날인케 하여야 한다.</p>	<p>(3)출두기일 경과 불출두자의 행정처분은 당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일괄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제 55 조 제 2 항 또는 규칙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4)운전면허의 행정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법제 5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허증을 반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 행정처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p> <p>(5)제 4 항에 의한 면허증은 행정처분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처분을 결정한 관서의 담당관이 보관하였다가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이를 당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p> <p>(6)법 제 65 조에 규정한 행정처분은 시장이 결정집행하고 그 처분사항을 제 29 조 규정에 의거 면허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7)한개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의 최후에 취득한 운전면허가 적성 검사미필로 인하여 취소사유에</p>
---	--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면허와 관련있는 모든 면허는 전부 취소 처분한다.

1. 교통사고 및 점수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취소 처분될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이상의 면허는 이를 취소하고 하위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전혀 달리하여 당해면허와 관계가 없는 면허일 경우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자가 다시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 1종 보통면허에 흡수한다.

3.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같이하는 상위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하위면허는 이를 전부 상위 면허에 통합 흡수한다.

(8)법 제 6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취소)되었던 면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해당처분을 철회되 당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의 정하는 바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이나 법원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된자의 당해 면허인 경우 다만,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의 사실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검찰 또는 법원에 조복후 처리한다.

2. 분실면허를 타인이 습득 행사하다가 취소된 당해면허 다만, 행사자의 행정상 또는 형사처분이나 부정행사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찰관의 사무취급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운전면허 다만, 관계귀책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한한다.

제 35 조 (운전자의 진출 및 전입업무처리) (1)타시도에 주소를 둔 운전면허소지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원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2. 적성검사 유효기간내에 주소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별지 제 10 호서식으로 진출지 경찰국, 서장에게 운전면허대장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원계인에게는 전입조사가 끝날때까지 법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면허증 검사유효기간 만료 20 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전입지경찰국, 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대장 송부청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진출자의 운전면허대장(정, 사본) 및 성명별카드를 첨부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거 진출지 경찰국, 서장에게 진출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 12 호 서식의 운전면허대장등 수발확인서들 필히 등첩하여야 한다.

제 36 조 (전입지 경찰국장의 처리) (1) 진출지 경찰국, 서장으로부터 진출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첨부된 면허대장(정, 사본) 과 성명별카드 기재사항만에 전입 일련번호와 전입사항을 기재 정리하고 면허발급 시도될

면허증별 및 면허번호 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전출통보에 첨부된 운전면허대장등 수발확인서는 해당란에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진출지 경찰국, 서장에게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제 37 조 (원계인에 대한 처리) 제 32 조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교부한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회수하는 동시에 보관된 운전면허증에 전입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원계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전출 및 전입자 대장비치) 제 32 조 내지 제 34 조 규정에 의한 전출, 전입하는 운전면허소지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경찰국 교통과에서 별지 제 13 호서식의 전출자대장과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전입자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39 조 (시내의 주소이동) 시내의 주소이동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초본과 운전면허증상의 인적사항 및 주소등을 확인한 후 면허대장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 정리하고 즉석에서 면허증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전면허적성검사

제 40 조 (적성검사) 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증을 서환 교부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검사당일 서환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면허증상의 교부년월일은 수검당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차 적성검사를 받았더라도 그때마다 사실상 적성검사를 받은 날자를 교부일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 3. 환개이상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시기전에 사전통합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의 적성검사는 최후에 교부한 면허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 수검토록 한다.

제 8 장 기타운전면허관계보고

제 41 조 (면허 시험 실시 계획 작성 보고)

제 2 조 규정에 의한 면허 시험 실시 계획은 당해년도 1월 31 일한 내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면허 시험 실시 경과 보고)

제 2 조 규정에 의한 면허 시험 실시 결과를 별지 제 15 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종료후 7 일 이내에 내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운전면허대장등 작성 보고)

면허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영 제 39 조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대장, 원부 및 규칙 제 26 조 규정에 의한 성명별카드를 작성하여

면허시험종료후 10 일 이내에 내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정례보고) 다음 사항을 익월 10 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월보 하여야 한다.

- 1. 운전자 배출현황 통계
- 2. 운전자 증감 "
- 3.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계 및 취소자 명단
- 4. 운전면허 적성검사통계
- 5. 운전자 학력별 현황 통계
- 6. " 연령별 "
- 7. 진출 운전자 명단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필 기 시 험 문 제 카 아 드

과 목	법 령	출제구분	난이도	급	정	답
					갑	
					을	
					병	
					정	
					기호	출 제 구 분
					1.	도로교통법 및 동령
					2.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령
					3.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령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별지 제 2 호 서식						
권 기 시 험 문 제 카 아 드						
과목	구조 및 취급방법	출제구분	난이도	급	정	답
					갑	
					을	
					병	
					정	
					기호	
					1.	구조지식
					2.	점검요령
					3.	고장분별요령
					4.	운전장치 및 취급요령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별지 제 3 호 서식

1	[]	갑	[]	을	[]	병	[]	정	26	[]	갑	[]	을	[]	병	[]	정
2	[]	갑	[]	을	[]	병	[]	정	27	[]	갑	[]	을	[]	병	[]	정
3	[]	갑	[]	을	[]	병	[]	정	28	[]	갑	[]	을	[]	병	[]	정
4	[]	갑	[]	을	[]	병	[]	정	29	[]	갑	[]	을	[]	병	[]	정
5	[]	갑	[]	을	[]	병	[]	정	30	[]	갑	[]	을	[]	병	[]	정
6	[]	갑	[]	을	[]	병	[]	정	31	[]	갑	[]	을	[]	병	[]	정
7	[]	갑	[]	을	[]	병	[]	정	32	[]	갑	[]	을	[]	병	[]	정
8	[]	갑	[]	을	[]	병	[]	정	33	[]	갑	[]	을	[]	병	[]	정
9	[]	갑	[]	을	[]	병	[]	정	34	[]	갑	[]	을	[]	병	[]	정
10	[]	갑	[]	을	[]	병	[]	정	35	[]	갑	[]	을	[]	병	[]	정
11	[]	갑	[]	을	[]	병	[]	정	36	[]	갑	[]	을	[]	병	[]	정
12	[]	갑	[]	을	[]	병	[]	정	37	[]	갑	[]	을	[]	병	[]	정
13	[]	갑	[]	을	[]	병	[]	정	38	[]	갑	[]	을	[]	병	[]	정
14	[]	갑	[]	을	[]	병	[]	정	39	[]	갑	[]	을	[]	병	[]	정
15	[]	갑	[]	을	[]	병	[]	정	40	[]	갑	[]	을	[]	병	[]	정
16	[]	갑	[]	을	[]	병	[]	정	41	[]	갑	[]	을	[]	병	[]	정
17	[]	갑	[]	을	[]	병	[]	정	42	[]	갑	[]	을	[]	병	[]	정
18	[]	갑	[]	을	[]	병	[]	정	43	[]	갑	[]	을	[]	병	[]	정
19	[]	갑	[]	을	[]	병	[]	정	44	[]	갑	[]	을	[]	병	[]	정
20	[]	갑	[]	을	[]	병	[]	정	45	[]	갑	[]	을	[]	병	[]	정
21	[]	갑	[]	을	[]	병	[]	정	46	[]	갑	[]	을	[]	병	[]	정
22	[]	갑	[]	을	[]	병	[]	정	47	[]	갑	[]	을	[]	병	[]	정
23	[]	갑	[]	을	[]	병	[]	정	48	[]	갑	[]	을	[]	병	[]	정
24	[]	갑	[]	을	[]	병	[]	정	49	[]	갑	[]	을	[]	병	[]	정
25	[]	갑	[]	을	[]	병	[]	정	50	[]	갑	[]	을	[]	병	[]	정

별지 제 4 호 서식

각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위 본인은 197 ○ ○ 도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제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을 입회 감독함에 있어 일체의 부정
행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만일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여하한 처분
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197

위 인

○○○시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위원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채 점 관 선 임 부

년월일	채 점 관			채 점 매 수	인	비 고
	소 속	계 급	성 명			
				○ ○ 학 응시번호○○~○○매		

별지 제 6 호 서식

기능 시험 입학 명부

년월일	입 회 관			입 회 상 황	인	비 고
	소 속	계 급	성 명			

별지 제 7 호 서식

운전 면허 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발급대장

결 재			일련번호	면 허			성 명	유효기간		발급사유	수령인	취성자명	회월수일	비 고
국장	과장	계장		발급시도	종별	번호		1회	2회					

별지 8 호 서식

교통 사고 발생 행정 처분 결정서
법규 위반

1. 주소 ; 시 구 동 면 가 번지 호

2. 면회종별 ; 시 도 면허 개 호 설명
번호성명 ; 시 도

3. 차량번호 ; 시 도 ()

4.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 조 내용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내용 ()
도로운송차량법 제 조 내용 ()

5. 처분내용 ; 면허 자 월 일 () 일간 정지 취소
자 월 일

197 . . .

○ ○ 경 찰 서 장

<별지제 9 호서식>

운전면허행정처분대장

결재			일련 번호	처분 년월일	면허종 별번호	성명	사고위 반대용 및배접	처분 기간	보관품	보관품 반환 일	보관품 수령인	비고
국장	과장	계장										

<별지제 10 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교 통 2039-

197

수 신 ○○경찰국장

참 조 보안 (교통과장)

제 목 운전면허대장 청구

1. 면허종별 : 제 종
2. 면허번호 : 시도 제 호
3. 구 주소 :
4. 전입주소 :
5. 성 명 :
6. 기 타 :

위 사람의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사본대장 및 운전면허성명별 카드를 요청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한의 위임을 받아

경 찰 국 장

<별지 제 11 호서식 >

서 울 특 별 시

보 안 2039-

수 신 ○○경 찰 국 장

참 조 보안(교통)과장

제 목 운전자 진출통보

보안(교통) 2039-(19 . . .) '운전면허대장청구'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출요자 통보합니다.

- 1. 면허종별 : 제 종
- 2. 면허번호 : 시 제 종
도
- 3. 주 소 :
- 4. 진출주소 :
- 5. 성 명 :

- 첨 부 1.운전면허사본대장 1부
2.운전면허대장 1부
3.운전면허 성명별 카드 1부. 끝.

권한의 위임을 받아

경 찰 국 장

<p><별지 제 12 호서식></p>					
<p>운전면허대장등수발확인서</p>					
발	발 송 일		도착예정일		
	대 장				
송	발송책임자	시 경찰국 계급 성명 인 도			
	발	접수일	취급자	계급	성명
시	송	처 리 경 위	담 당 간 부	인	
	된 사 항				
도	접 수 일		발송예정일		
	접 수 상 황				
수	반 송 일		취급자		
	반송책임자	시 경찰국 계급 성명 인 도			
도	처 리 상 황				

<별지제 13 호서식>

전 출 자 대 장

전출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전출 일련번호	성명	전출지주소	비고

<별지 제 14 호서식>

전 입 자 대 장

전입일자	전출시도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전입 일련번호	성명	전입지주소

<별지제 15 호서식>

운전면허시험실시결과보고

면허종별	구분 면허구분	응시 자수	필기 시험		적성 검사 합 격 자 수	기능 시험		최 종		비고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응시 자와 비	합 격 율	
종	계									
	면허									
	면허									
	면허									
	면허									
	면허									
	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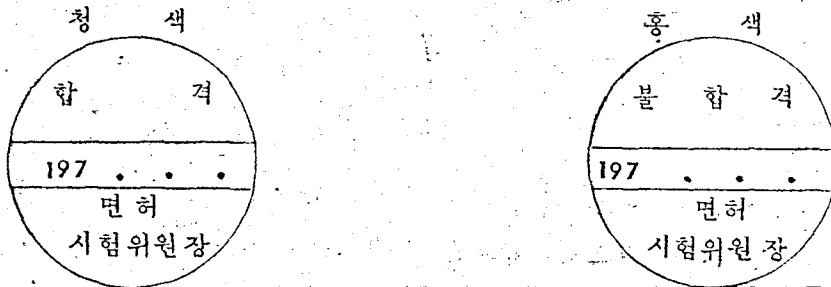
<별표 1>

면허시험판정고무인



<별표 2>

응시표 (이면) 판정고무인



훈 령

서울특별시 공문서보관·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 훈령제 461호

서울특별시공문서보관·보존등에 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공문서 보관, 보존규정 및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 책정기준에 관한 건(이하 영이라 한다)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문서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존기간) ①공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영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종별이 없는 문서의 보존기간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따로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영에서 규정한 보존기간을 변경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문서의 보존기간은 문서 주무과에서 결정하고 이를 문서주관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관 및 보존

제 3 조 (구분) 문서의 내용중 사업의 일부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은 미결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하고 보존문서로서 할 수 없다.

제 4 조 (보존) 영구 보존문서는 마이크로 필립화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서는 보존기간을 재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원본과 대조를 요하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문서목록) ①영구보존문서로서 과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그 목록을 3부 작성하여 2부를 문서주관과에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

②문서목록은 발생년도, 부책명 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관) 5년이하의 보관문서는 각 실·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주관과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문서보존) ①공문서 이외의 팜프렛, 책자, 도면, 연구 보고서 등 시청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자료실에 비치용

으로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의 의사결정문서(방침결정문서)는 그 기관(또는 국, 실)의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주무과에서는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 3 장 공문서의 소개

제 8 조 (우선순위) 각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보관, 보존문서는 천재 기타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순위 — 영구보존문서
- 2 순위 — 10년이상 보존문서 및 미결 문서
- 3 순위 — 5년보존문서
- 4 순위 — 6월 - 3년보존문서 (폐기를 원칙으로 함)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서울특별시보존문서 재분류작업 세부지침(68.5.1)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서울특별시 보존문서 재분류작업세부지침에 의거 분류된 문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것으로 본다.

103-34

〈별표〉 공문서 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120	문서관리	우편물 T.T 운영	공 후납관계 서류	3
			특수 우편물 수발대장	5
			T.T 운영에 관한 일반문서	1
			T.T 기술지도관계 T.T 회선 전용관계서류	3 연구
133	의사	각급기관장 및 간부회의	의안대장	연구
			의안	3
			의사일정	"
			회의록	"
135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3
			시세기타제 증명	"
143	행정감사		인감 발급대장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5
			감사원 감사에 관한 문서	3
			특별감사에 관한 일반문서	1
			자체감사 관계문서	3
150	행정관리		감사대장	연구
			지방행정 상황보고 관계서류	1
			제안제도 제안제도 심사관계철	5
			자료실운영 자료실 운영관계철	3
			기반행정 기반행정 연구발표에 관한서류	1
기반행정 육성	3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존 기간
			시범구 시범동 육성에 관한서류	3
		행정구역	도시행정 관계서류	3
			행정구역 관계서류	영구
		행정개혁	행정개혁에 관한서류	영구
		행정제도	동장관장에 관한서류	영구
		가로명	가로명 제정에 관한서류	영구
151	조직관리	기구정원	시직제 개정에 관한문서	3
152	행정제도	사무이양	사무이양 관계철(자료)	3
173	의회	시의회	시의회의안	영구
			시의회 회의록	"
206	인사기록대장		시의회 등록관계서류	"
			3 급이상 공무원	"
			4 급이하 일반 및 고용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아니	준영구
			면서 신분소속기관 참고용	
			시인사발령 개가원본	영구
			시인사발령 원부	영구
230	시험	자격, 채용 승진, 전직	시험계획서, 일반문서	1
			응시원서 및 동접수부	1
			시험답안지 (주. 객관식포함) (행정소송 제기시, 소송확정후 1년)	1
			구술시험지	
			시험 체제표 및 집계표	
			시험위원회 관계철	
			시험 요구서철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 종 별	보존기간
236	4.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원칙 및 대장 합격자 대장 및 성적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각종기입 또는 선택형 시험답안	3 영구 1 3
240	4.5급기능 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각종 논문법 시험 답안	3
260	공무원교육	직장훈련	직장훈련 관계철	1
261	교 무		학적및 성적에 관한 사항 증서 교부	5 5
291	상 혼	대 장 혼 기 부	상혼대장 감사장부 (시찰) 수혼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여 년월일 기록문서	영구 영구 영구
	상별	상혼심의 징계	기관장 명의로 상신된 원안으로써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공적증거자료 징계대장. 징계관계문서	10 영구. 5
316	운수보관 부분	도시교통	지하철 건설계획 승인 인가철 지하철 건설도시계획 예상물등 설계 시경 계획에 관한 자료및 계획조사철 지하철공사 설계서	영구 5 영구
321	차관		ADB 차관 협정서및 원리금상환관계서류 ADB 차관과 관련된 전반적인문서	영구 10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 종 별	보존기간
412	건설기술자면허		면허질의 관계서류	영구
418	건설사업인가		공사대장	영구
430	건설계획	지하철건설 종합계획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한 계획조사	5
432	도시건설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사업 실시 계획인가 관계철	영구
			환지 지정공고 관계철 (변경공고포함)	5
			공사설계도	5
			공사준공서류 (준공도면포함)	영구
			공사대장	영구
			환지 확정처분 관계철	영구
			채비지 매각계획 관계서류	3
			채비지 처분공고서류	5
			채비지 매각대장및 관계서류	영구
			지장물 보상지분 관계서류	5
			청산금 조정관계서류	5
			청산금 증빙서류	5
			환지 종타 등기 관계서류	3
436	지수및 수 리사업	하천 관리	하천유지 관리에 관한서류	3
441	도로및 도량	도로교량	신설및 복구공사에 관한사항	5
			도로 굴착및 복구에 관한사항	3
			도로시설물 보수및 개수공사에 관한사항	5
			중요시설의 준공 설계도서	영구
			신설및 복구공사에 관한사항	5
		터널 및 지하차도	중요시설의 설계도서	영구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 종 별	보존 기간
442	도시사업 상수도	공원개발	공원계획 승인에 관한서류 공원사업 공원시설에 관한서류	영구 영구
		공원관리	점용 사용허가·사업집행허가 시설관리허가	영구
		준공도	공사준공도서	영구
		기본계획	시설기본계획	"
		실시설계	상수도 시설세부계획	"
		시설결정	시설결정 신청서 및 경정통보서류	"
		설계	공사설계서	10
		검사	준공 및 기성고검사	10
		감독	공사감독 관계서류	5
		보고	공사공정, 착공, 준공, 준공기한 연기	5
		일반문서	경미한 지시 보고협조 문서	3
		시설관리전환	상수도 인계 인수 관계서류	영구
		사업인가	상수도 사업인가 (가압장, 펌프장)	영구
		일보	공사전행 일보	1
444	건축	건축허가	건축허가 서류 (10층 이하)	3
			건축허가 서류 (10층 이상)	5
			특수건물 (공공건물 및 아파트)	영구
			건축허가대장	"
			건축사 관계서류	"
			건축사 사무소 등록대장	"
			무허가건물 순찰일지	1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 종 별	보 존 기 간
			무허가건물 확인문	3
			적발 무허가 건물 처리대장	3
			무허가 건물보고서 첩	3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대장	3
			신발생 무허가 건물첩	영구
			무허가 건물대장	영구
			무허가 건물 관계첩	3
451	도로및교량		도로시설물 보수및 개수공사에 관한사항	5
452	도시사업	설비승인	각종원조 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사항	10
		상수도	도면 정비에 관한문서	5
		재산관리	상수도 기업용 재산의 현황구매 구입및 정수에 관한문서	5
			상수도 사용량 점검및 조정집계에 관한 문서	영구
			상수도 기업용 재산의 대장정비, 신규등록	영구
		급수시설관리	급수 시설 보수 및 양수기장치 관계문서	3
			상수도, 실시 계획인가에 관한사항	영구
			매수 용지 대장	"
			급수전 설치카드	"
		기금운영	재정자금 운영 특별회계의 예탁에 관한 문서	"
			차관및 외자 관리에 관한문서	"
		불량주택 지구재개발	재개발 종합계획 (방침)	"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460		상수도사업	재개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결정 환지 지정분양지 지정공고	영구	
			용도지역 변경, 양성화및 현지 개량지구 지적 정리	"	
			재개발사업, 시행지시	"	
			고지대 불량건물 종합계획	"	
			재개발 사업행위 완화	"	
			토지매각 의뢰	"	
			공사 준공도서	영구	
			기본및 시설세부계획	영구	
			공사 설계시, 준공, 기성고검사	10	
			공사감독, 공사공정보고 준공, 착공보고	5	
			준공기한 연기보고	영구	
			신 청 서	중기등록 신청서류	10
			대 장	등록대장 (등록원부)	영구
			자 자	차대각자및 번호판 제작지시서	5
				차대각자 시행 보고서	5
			등 록 증	등록증 교부대장 및 재교부	5
			변 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정 신고	5
				소재지 변경 신고서	1
			전 출 입	등록이관 (타시도) 서류	5
			말 소	등록적권 취소및 말소 신청서	3
			등 초 본	신규등록용 등초본 신청서	5
	등록원부 등초본 및 열람신청서	1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470		중기검사	검사 기록부 기타	10 3		
		중기지당	지당 원부 지당 설정및 말소 압류촉탁 서류	10 5		
		조정사시험	시험 성적표 합격자 대장 기타응시원서, 답안지, 채점표, 적성검 사 관계서류	10 영구 3		
		조정면허	면허증 교부자 명부 면허카드 조종사 신상변동신고 면허현황 행정처분서류	영구 1 3		
		임시운행 대여	등록전 임시 은행 신청서 중기기 수시 대여	3 영구		
		반납	중기기 수시 반납	영구		
		연기	중기기사용 면허승인 (수시및연 2회)	10		
		전기부속품	각종중기기 부속품 청구및 반납	영구		
		행정처분	법규위반 중기고발등	3		
		주택건설	국민주택건설(민영) 사업계획 승인 국민주택 가격 승인	10 10		
		811	행정소송	행정인사소송	각심 판결문 결정문	영구
		854	인감	인감신고및 증명	인감신고 및 증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영구 1
		856	주민등록		주민등록 및 전출입 신고서 철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신청서 접수대 장및 민원 전표	5 1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주민등록 색인부	영구
			주민등록 신고서 및 접수대장	영구
			주민등록 번호 조립부	영구
			주민등록 부표	영구
			본적지 통보 처리부	5
			본적지 조회 관계철	5
			주민등록표	영구
			주민등록 통보서 발송대장	3
			주민등록 사항 등록 접수부	3
			주민등록 분실 신고서 접수대장	3
			주민등록 직권 말소에 관한서류	3
			주민등록 번호 부여 대장	영구
			주민등록증 수불 대장	10
			" 발급 대장	10
			" 분실 신고서	3
			거주표	영구
			주민등록 회수 인계 대장	영구
			" 전입 확인서	3
			" 신고 관계서류	5
			" 이송 관계서류	3
			말소 주민등록및 퇴거증	영구
			주민등록증 이의신청 관계서류	3
			" 회수보관에 관한철	1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911	민 방 위		민방위 준비 명령카드 훈련장비및 화생방 장비 민방위 교육 방위협의회 관계문서 사범처리 민방위 훈련 관계철 각종 보고서 민방위대 자원보고 및 통계 민방위대 신고망 관리운영 통민방위대장 신상 관계서류 주민통계 소산 및 민방위 대원 동원에 관한 서류 민방위 협의회 운영실적 보고 민방위 협의회 운영보고 민방위 시설 월보 집계표 " 업무보고철 " 시설및 훈련장비에 관한사항	영구 영구 10 5 5 3 1 3 3 3 3 3 3 5 5 3 3 영구
912	면 제 조 직		민방위 대원 명부 직장 민방위대 명부 민방위 편제에 관한 서류 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제, 이동 변동신고에 관항사항	" " "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922	정훈활동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지역및 직장 민방위대 교육관계서류	10
			교관위촉관계 서류	3
			민방위대 홍보 관계서류	3
			" 교보제 관계서류	3
937	예비병력	운 영 동 원	화생방 장비 구입 관계서류	5
			화생방 요원및 임명및 감독에 관한서류	10
			민방위대 동원대 관한 서류	3
			부상자 가료에 관한서류	5
			전역통보	영구
			병역의무자 출귀국 통보	5
			보충역 교육 소집	5
			기술교육에 관한서류 각종일지	3
1030	기술교육			
1151	임 정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대장	영구
1152	녹 지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3
			가로수 대장	영구
			공원용지 대장	영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3
			공중변소 관리대장	10
			공원녹지대 기념물 관리	3
			유원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	3
			절개지 단장미화	10
			거리환경 미화및 노변 꽃심기	1
			화초류 생산사업 지도육성	1
	비 일 야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1153	산림보호	그린벨트 관리	수불대장	영구
			수목분야 관계철	5
			잔디분야 "	5
			꽃모분야 "	5
			그린벨트 관계철	3
1162	가축개량 증식	지정보호수 토석채취 육용우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대장	영구
			항축판독 사항처리	3
			토지형질 변경허가	10
			지정보호수 관계철	10
			토지형질 변경허가	10
1173	수산증식	생 산 어업허가	토석채취 허가 관계철	10
			도입육용 종부관리	5
			육용우 생산 및 출하계획	3
1194	새마을사업	새마을취로	대형 안강망 어업면허 관계	영구
			기선유망어업 허가관계	5
			대형기선 저인망 허가관계	5
			일일점점부	3
			취로 대상자 연명부	3
			새마을봉사 관금자재 수불대장	5
			의료사업 새마을 무료 진료권 발급대장	3
새마을취로 노임치불에 관한서류	5			
취로대장	3			
작업일지	3			
취로증 발급대장	3			

분류 기호	기 명 칭	세 부 기 능	기 능 증 별	보 존 기 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위촉 해촉 관계서류	3
		새마을교육	새마을 교육에 관한서류	"
		새마을장학금	새마을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5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육성및 재무에 관한서류	"
		새마을사업및 지도	새마을사업 (공사) 에 관한사항	"
1211	예 산	보 고	예산집행 상황보고에 관한문서 월말금고 현재액 보고문서 예비비 지출 상황보고문서 예산편성 관계문서 세입세출 예산요구 및 자료 세입세출 예산배정 기획및 배정서	1 " " " " "
		승 인	예산안의 승인관계 서류	영구
1213	수 입	수 도 수 입	수납 및 조정관계철 업종관계철 다량급수처 관계철 급수전 관계대장	5 " 3 영구
1214	지 출		계약대장	5
1216	채 무	기 채	기채자금 상환관계철 기채승인및 자금 차입관계 기채대장	영구 " "
1231	지방세	지 방 세과징	징수총괄표 (세입 징수세) 징수부 납세봉지서	5 5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개부기능	기능종별	보존 기간
			수납부 및 동집계표	5.
			징수결정액 통지서	"
			납부 (세입) "	"
			최고서 "	"
			기일변경 고지서	"
			징수보고서	"
			세입 이월액 계산서	"
			불입서	"
			납부 (납입서)	"
			현금 영수원부	"
			세입 월계표	"
			과목 개정 요구서	"
			세입 금정 "	"
			현금 영수부 수불부	"
			시세입금 수불부	"
			과세액의 결정 또는 개정 통지서	"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및 납부 기간	"
			연장통지서	"
			판허사업 정지요구서	"
			채납액 징수유예 신청서 및 징수유예 정수부	"
			채납액 징수유예 신청서 및 징수유예 통지서	"
			지방세 부과취소 변경통지서	"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공시 송달부	5
			유가증권 수급부	5
			출납원 사무인제 보고서	5
			망실징수금 납입잔무 면제 신청서	5
			자격증명서 발급대장	5
			채납액 정리부	5
			채납처분 증기조서및 증지공고 처분안	5
			압류조서 및 압류물건 보관 회색조서	5
			화물인도 요구서	5
			반압류 (반처분) 증 재산압류 통지서	5
			채권압류 및 재산압류 통지서	5
			압류재산의 사용수의 허가사항	5
			무채 재산권 압류통지서 및 해제조서	5
			공일재산 견증자격조서 및 평가감정서	5
			질권 설정서	5
			과실인도 요구서 지급요구서	5
			입찰서 및 입찰조서	5
			등기청구서 및 공제통지서	5
			매각 결정 통지서	5
			경매조서	5
			냉업권 이전 촉탁서 등기	5
			채납처분 종결조서	5
			공탁서 및 공탁금 정리부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공매처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 탁서 소환장(대장)	5
			압수 수색영장 청구서(대장)	5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동보판증	5
			수색조서 및 법척업체 조서 보고서	5
			법척협의회 신분조서, 고발서, 전말서	5
			년도기분감류 농지세 상황및 대체징수	5
			꼭수납 상황 보고	5
			년도기분감류 농지세 수검조서	5
			독촉장 발급대장	5
			결손조서	5
			징수결 의서 및 징수결 의 내역서	5
			자진 납세 대장	5
			납세 관리인 지정통지서 및 설점(5
			변경) 신고서	
			부과실적보고서	5
			소득세 부과세 대장	5
			재조사 청구서 및 조사서	5
			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5
			국세, 부과세 과오납금 안분계산서	5
			및 특별 징수대장	
			소득세 부과세 자진 종간예납 및	5
			자진신고 납부 계산서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명칭	기능 종 별	보존기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소 득세 부과세	5
			세수시 부과징수액제산서 및 징수명세서 취득세 대장	5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액 계산서 및 감액 신청서	5
			취득신고서 동과세 대장 및 취득건물 전출, (전입) 신고서	5
			귀속재산,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한통보	5
			취득세 과세자금 동처리 및 과세내역서	5
			자동차대장 및 자동차세 카드	5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서 통지서	5
			각종세표	1
			하월분 유흥음식세 납입 신고서 및 과세내역서	5
			유흥음식세 과세대장 및 동비과세 확인대장	준영구
			유흥음식세 비과세 확인 신청서	3
			음식물의 종류별 1인1회 통산 요 금표	3
			유흥음식세 요금액수 청구서 교부대 장	5
			유흥음식세 비과세 결정 통지서	5
			유흥음식 장소 영업 변경 신고서 및 과세 장소 지정소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유통음식세 비과세 장소 철회 과세 장소 지정 통지서	3
			승계 상속 신고서	3
			유통음식세 실속검사대장 집계부	5
			유통음식세 경영자 대장 및 동 집 계표	5
			납세담보대장	영 구
			도축세 대장	영 구
			도축세납입 신고서 세액보고서	5
			면허세대장 및 동 대장 집계부	영 구
			면허세면제신청서 동 면제에 관한 결정 통지서	5
			면허부여 변경 취소에 관한 통보	5
			재산세 대장 이동 통지서	5
			공영공익 사업용 재산신고	준영구
			가옥신축(감실)이동신고	5
			임대 가옥등급 사정 신고	영 구
			광구 면적 신고서	5
			공영, 공익, 사업용 재산의 재산세 면제 신청서 및 동면제에 관한 결정통지서	5
			재산세 대장	영 구
			재산세 감면 신청서	3
			재산일제 조사부	5
			가옥 비과세 대장	영 구
			가옥조사표(가옥건축도) 및 토지조사부	영 구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토지 비과세 대장	영구
			재산이동사항 실적 보고서 및 소유 자 이동내역서	5
			토지비준임가설정 승인 신청 및 동 신청내역서 (비준임가설정)	영구
			토지비준 임가 설정승인 신청결정	"
			통지세 및 동결정 통지 내역서	"
			토지비준 임가 설정에 수반하는 지목 지번별조서	"
			토지비준 등급 결정서	"
			토지임대 가격 사정 신청서 및 토지 이동 통지서	5
			과세토지표	"
			과세 가옥표 과세 광구표 및 재산세 과세대장	"
			농지세 대장 (잡, 울) 및 동집계부	영구
			농지세 대장 집계부 (과세지 비과세지 면세지 및 동집계표)	"
			재해 감면 예상지조사서	5
			토지 과세 (비과세) 지정조사 확인 및 잡, 울규농지세 실태조사부	"
			수입금액 종합공고	"
			출입 경작분 내역서	"
			토지 대조표 집계표	"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토지 기준 수확량 설정 승인 신청서 동 내역서 및 결정통지서 동 통지 내역서	영구
			소방공동시 설세 (재산세 준할것)	5
			지번별 조사서 (농지 실태 조사서)	5
			토지 소표	영구
			개간 (매립 간척) 지 농지세 면세 신청서 및 동 결정통지	5
			농지세 면세 사항정리대장 동 정리대 장집계표	영구
			농지세 과세 자료 및 을류 농지 소득금액 신고서	5
			토지 과세 (비과세) 지정 및 황지	5
			농지세 면세 신청	
			재해시 농지세 감면 및 납세 자격	5
			상실자 농지세 감면신청	
			중군 징용된자 농지세 격감 및 전	5
			사 순직자 농지세 면세신청	
			공공용지 사립학교용지 농지세 및	5
			공용공공용지 사립학교 용지 면세 신청서	
			수도(水稻) 식 부맥 두(豆)경작 상황조사보고서	5
			과세지 (농지) 현재액 조사 보고서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재해감면 상황 보고서 및 동 감면 처분 조사서	5
			수입 금액 (수확량) 결정통지서	5
			특수 작물필요비 조사보고서	5
			감류 을류 농지 세표 및 감류 을 류 농지세 인원표	5
			감, 을류 이동지 세표 및 조사 수 확 종람공고	5
			년도기분 감류 을류 농지세 납감액 보고	5
			도시계획세 대장 및 동 대장 집계 부 동 부과세 대장 집계부	영구
			도시계획세 감면 신청서 및 동 신 청 결정서	5
			도시 계획선 편입토지 집계부 및 동 집계 내역서	5
			토지 비준 임대 등급 가격조사서 및 동상전 조사서	영구
			세계 세원 심사 및 탈세 조사에 관한문서	5
			세입 과오납금 환부 관계 서류	5
			검수 추락 관계 서류	1
1231		세무통계	각종 세무관계 자료	5
1232	세원및 심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기업 실태 조사와 국세 심사 사무처리 인계	5
1233	탈세조사		탈세 관계 및 시찰 사무 관계 서 류	5
			요감시찰 실적 및 자료	3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 종 별	보존기간
1234	직접세	지방세	각종직접세 대장	영구
			징수부과 관세서류	5
			법인세적	영구
			소득 표준율	3
			등록세표	"
			소득 표준율	"
			등록세표	"
			등록세 시가 표준	"
			취득세 조정 (징수 결정)	5
			농지세 결정	"
1235	간접세	지방세	목적세 "	"
			유형음식세 결정	"
			도축세 결정	"
			면허세 "	"
1242	세 무	지방세	자동차세 결정	"
			수입 수출등 통관허가 관계및 세무관계 기타특허	3
1243	감 정	지방세	수입 수출품 통관승인 관계	3
			수입 수출품의 과세가격 감정판제	5
			수입품의 과세	10
			수입물품의 국내시가	5
			국세법 위반 법칙 관계	10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1244	감시	지방세	통관 과정의 감시 특히 단속관계 면세물품관리에 관한 감독치제관계	1 5
1245	심리	지방세	법칙 물자 처분관리	"
1260	국 사유재산	"	목수공예 감각처분관계 국사유재산 처분계획 실태조사 계획 재산대장 재산도면	" 3 영구 "
1261	관리	지방세	국사유재산의 관리한 보상시설에 관한 문서 재산(국유) 평가에 관한 서류 기업체 주식을 제외한 재산관리철 국유재산 중 영구재산 관리철 국유재산의 축자에 관한 사항 기업체 주식을 제외한 재산관리 국 사유재산중 영구 재산관리철	5 " " 영구 " "
1262	압류	지방세	압류에 관한 문서철	5
1263	감정	"	무상대부 관계철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철 보존재산 대부료 조정부 국 사유 재산의 건물 기타 임야에 대한 기준 재산 감정 가격 심사에 관한서류	" " " " " "
1263	감정	무상대부	무상대부 관계철	10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1264	매각	지방세	행정재산 사용허가철	10
			보존재산 대부 관계철	"
			대부료 조정부	"
			국 사유재산의 건물대지 임야에 대한기준	"
			가격책정에 관한 일반 재산감정	"
			가격 사정에 관한 서류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관계서류	5
			무체재산 매각 광산매각 변경관계	영구
			매각대 징수대장	"
			재산처분대장	"
1265	재산조사	지방세	재산대부대장	"
			국 사유재산의 판매대 부분금 대여	5
			자료 출자수입	"
1267	재산조사	지방세	타회계 전입금 유가증권 취급 잡수	"
			입에 관한서류	"
			국유재산의 대장정리 신규등록 도면	영구
1268	취득	지방세	정리에 관한서류	"
			국시유재산의 현황파악에 관한 서류	5
1270	공유재산	"	국시유재산의 증감에 관한 서류	"
			기부채납 매입기타 취득에 관한서류	영구
1311	상정	시장운영	공유재산 관리서류	5
			시장 사용료 과정에 관한 문서	5
			공설시장등 고시에 관한 문서	3
			시장부지 사용허가에 관한 문서	10
			시장허가 대장	영구

분 류 가 호	기능명칭	세 부기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32	중소기업지도 육성	수출전환육성	전환업체 시설자금 관계철	5
			수출 전환업체 선정 및 신청 사후 관리대장	1 영 구
1343	유 류	가정 열관리 고 압 가스 도시 가스 산업열관리 연료사용기기 관리 기술 관리 연 탄 수급 표시 허가 표시신청심사 허가	가정 열 관리 계몽지도	1
			고압가스용기 기기제조업소 허가 원부	영 구
			고압가스기구 신고업소 신고원부	"
			고압가스 각종검사 서류철	3
			고압가스 제조업소 행정처분 관계철	5
			도시가스 생산에 관한문서	3
			도시가스 분석에 관한문서	10
			열 관리 사업계획	5
			열관리 대상자 지정및 취소 지도 계몽 서류철	5 1
			제조업허가 및 형식 승인	3
			연료 사용기기 사후관리	3
			설치검사 관계철	5
			검사대상기기 계속 사용검사	1
			품질 (연탄)	3
1370	표시 허가	표시신청심사 허가	표시 품 월간 생산보고서	5
			기말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5
			시장조사 관계 문서	3
			시험분석 성적서	5
			표시 허가공장 생산조건 변경 관계문서 벌칙 처리 관계 문서	3 5

분 류 기 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X선촬영	X선촬영 대장	5
			필립 소모품대장	5
			간접촬영 대장	5
		진 료	환자 기록부	5
		간 호	수술실 업무일지	5
			분만실 업무일지	5
			간호과 일지	5
			간호사업 월말 보고서철	5
			각 병실및 응급실 일지	5
			약품및 물품 수불 관계	5
			외래 환자 일제	5
1434	공중보건	가족계획	가족계획에 관한 시술비의 권장비문서	1
1436	식품위생	영업허가	식품제조 및 영업허가 대장	영 구
			식당 영업허가 대장	"
1437	오물처리	일반오물	오물처리업 허가	3
			쓰레기 매각 관계 서류	5
			진개수거료 조정및 수납 관계철	5
			진개수거료 수입 보고서	5
			가정 오물수거료 수입보고서	5
			영업용 " "	5
			진개수거료 조정카드	5
			영업용 오물수거료 수납부	5
			가정용 " "	5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1438	환경 위생 지도 관리	액상폐기물 정화조시공및 청소 분뇨처리	오물수거료 영수조서	5
			가정용 오물수거료 조정 명세서	5
			등록 및 허가관계서류	영구
			업자등록허가 대장	"
			정화조 설치 처리 대장	"
			정화조 설치에 관한서류	3
			정화조 시공청소업지도감독 서류	3
			분뇨 위생처리	5
			공중변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서류	3
			청소행정의 지도감독 문서	1
1445	등록	묘지 화장장 매 화장 유골 보관 대장	묘지 화장대장	영구
			매 화장 신고증	3
			유골 보관 대장	영구
1449	마약 관리	약국 폐업 의약품 판매 허가 등록 및 허가	약국 폐업 신고서	1
			의약품 판매업 허가신청서	3
			약국등록 대장	영구
			의약품 판매업 허가대장	"
1461	후생 복지	습관성의약품	습관성 의약품 지정 신청서	3
			지정 폐업 신고서	1
1461	후생 복지	공공시설	건립계획 및 운영에 관한 문서	10
			시비 장학생 지급 대상자 선정 관 제철	3
			여행사망자 처리대장	5
			시비 장학생 장학금 지급대장	영구

분 류 기 호	기 능 명 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 존 기 간
		파월장병지원	파월 장병및 가족지원 관계서류	3
			파월 장병대장 (카드)	3
		전당포 운영	전당포 운영관계 서류	3
		자조노력사업	양곡배정 관계 서류	5
			자조 노력 "	5
			사업 부수 서류	3
1463	수용 보호	모집 (입원)	수용 시설 입원 관계절	3
1471	구호사업	영세민구호	이웃돕기 성금, 성품 지출 증명서	5
			이웃돕기 관계서류	3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	3
			생활보호 대상자 대장	5
1477	허가	기부금품 모집 허가	허가관계	3
1481	부녀지도	일반부녀자 지도	의례업소 허가 서류 및 대장	영구
			생활관 및 사업장 설치	"
			부녀교실 설치	10
			모범 부락 설치	5
			시민결혼, 어머니회, 각종제몽사업	3
			각종보고서	3
			가정의례 준칙보고	3
			어머니회	3
			어머니 교실관계	3
			아파트 부녀교실 설치	10
			" " 관계보고	3

분류 기 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82	부녀보호		모범 부락 설치	5
			" " 보고	3
			금화 생활관 설치	영 구
			양지 사업장 "	"
			양지 사업장 보고	3
			각종제몽 사업	3
			각종 행사	3
			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소 운영에	5
			관영 서류	
			출업자 명부	영 구
			직업보도대장	10
			행사관계	3
			윤락여성선도 시설법인 시설 및 허가	영 구
			시설법인 시설지도	5
			보조금 관계	5
			부녀상담 및 검진관계서류	3
			상담카드	영 구
1483	모자사업	부랑부녀자 수용보호 미망인보호	보호소, 직업보도소, 시설지도	5
			법인관계인허가, 신청서류	10
			법인관계 허가대장	영 구
			보고	1
			시설법인 입, 퇴소관계	3
			시설법인지도	5
			법인관계인허가 관계신청	영 구
각종보고	1			

분 류 기 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85	아동복지시설	법인시설	보조금관계	5
			아동복지시설인가 관계철	영구
			아동복지 예산관계철	5
			사단법인 관계철	3
			사회복지 법인관계철	3
			보조금 관계철	5
			법인임원 취임 및 개선허가철	3
			정관변경 허가신청	5
			기본재산 대체허가 신청	3
			후생시설 대표자 명의변경허가	3
			사회사업 위원회철	5
			후생시설 수용의회 및 전원조회	1
1488	원 조	특수시설	풍수해 관계철	5
			특수 수용아 및 우량아등록대장	영구
			각종행사 관계철	3
1502	수입심사	여 객	아동복지시설 자매결연 관계철	3
1512	화물수송	작 업	승차권류, 청구권, 승차권류송부서	5
			승차권부, 승차권류, 수불부	
			운수장표류, 수불부	5
1512	화물수송	작 업	운수장표류 송부서	
			신규허가 기본계획 및 방침	10
			양도, 양수인가 임차약관 보조금인가	10

분류 기호	기능명칭	세부기능	기능종별	보존기간
1541	교통	행정	면허대장 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 노선개선 명령서(임시운행) 차량교습 및 교습소 관계서류 운수회사 기업화 관계서류 공황택시 운영에 관한서류	영구 3 1 3 5 5
1545	조합및연합회	약관인가	자동차 운송회사의 약관 관계서류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및 연합회 감독 및 지도에 관한 문서	영구 5 1
1546	창고업면허		신규허가 기본계획 및 방침 양도양수인가 임차약관 교관 요금 인가	10 10
1547	자동차정비	정비사업	자동차 정비사업에 관한서류 자동차 정비사업 감독 및 자동차 점검에 관한서류 자동차 정비사업 허가철	3 3 영구
		정비사자격	정비사 근무 및 양성에 관한문서 정비사 자격증 교부대장	3 영구
1562	선로유지보수	노선정비	선로 검수 진동 심사분석	5
1371	보도행정		안보 및 산업시찰 관계 안보 및 반공관계	3 3
1811	취학관계		취학 일반적 사항	3
1812	학비관계		학비지급	3
1813	수용보로		수용보호 일반적 사항	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4.7) 로
신설되어 건설부고시 제 109 호
(76.7.19) 로 재결정된 당시관
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9.30

서울특별시장

○ 지적승인조서

등급	유별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대로	1	21	35 ^m	2,640 ^m	국립묘지앞 (대 3-7)	잠원교 (대 2-48)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끝 .

◎ 서울특별시고시제 253 호

동청사 위치 변경

다음과 같이 동청사의 위치가 변

경되었기 고시합니다.

1976.10.2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동 명	위 치 변		이전일자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마포구연남동	마포구연남동 226-16호	마포구연남동 223의 91호	76.10.2	

◎ 서울특별시고시 제 254 호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인 가 고 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14 호 (76.9.4) 로 토지계획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 213 호 (76.9.9) 로 실시계획공람 공고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제 25조 제 26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11 항에 의거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나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가름함을 알린다.

1976.10.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온수동산 12-1번지일대
- 2. 사업의종류 :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

3. 사업의 명칭 : 온수주택단지조성사업

4. 사업시행면적 : 69,498㎡
(21,060평)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6. 사업기간 : 76.9-1977.12.31

7. 인가내용 : 별첨인가조서 (생략)

8. 사용토는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9. 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제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5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및
지 적 승 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 호 (72.7.13) 제 94 호 (72.7.10) 제 40 호 (72.4.6) 제 60 호 (71.10.2) 및 제 29 호 (72.3.9) 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당시 관내 72시행 현지개량사업지구인 미아 7.8동, 노량진동 북아현 5.6 7.8.9.10, 홍제 3동, 병천, 천연지구 및 68양성화 사업지구인

충정로 3가지구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동법시
 행령 제 7조의 2 및 동법제 13조
 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976.10.2

서울특별시장

변경결정및지적승인노선조서

지구별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미아 7 . 8 동지구)							
변경	소로	3	1	6	60 ^M	미아동 837 - 1568	미아동 837 - 1571
(위치변경)	"	3	2	6	102	" 837 - 1595	" 837 - 1603
"	"	3	3	6	80	" 837 - 1603	" 837 - 915
"	"	3	4	6	150	" 837 - 408	" 837 - 1128
"	"	3	5	6	32	" 837 - 1126	" 837 - 1278
"	"	3	6	6	254	" 837 - 1286	" 837 - 1618
"	"	3	7	6	108	" 837 - 1457	" 837 - 1287
"	"	3	8	6	358	" 837 - 1725	" 852 - 651
"	"	3	9	6	546	" 837 - 714	" 837 - 1412
"	"	3	10	6	348	" 850 - 1	" 837 - 1468
"	"	3	11	6	156	" 844 - 1	" 852 - 93
"	"	3	12	6	572	" 852 - 256	" 837 - 1468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 장	시 점	종 점
(위차변경)	소로	4	1	4	28 ^M	미아동 837 - 1603	미아동 837 - 381
"	"	4	2	4	78	" 837 - 118	" 837 - 1180
"	"	4	3	4	16	" 837 - 1610	" 837 - 1628
"	"	4	4	4	96	" 837 - 1227	" 837 - 1244
"	"	4	5	4	110	" 837 - 1226	" 837 - 1261
"	"	4	6	4	48	" 837 - 1641	" 837 - 1637
"	"	4	7	4	230	" 837 - 712	" 837 - 1278
"	"	4	8	4	104	" 852 - 91	" 852 - 323
"	"	4	9	4	36	" 852 - 395	" 852 - 408
"	"	4	10	4	132	" 852 - 51	" 852 - 524
(노 량 진 지 구)							
"	"	3	1	6	272 ^M	노량진동 302 - 172	노량진동 315 - 52
"	"	4	1	4	401	" 298 - 4	" 194 - 459
"	"	4	2	4	145	" 299 - 5	" 302 - 101
"	"	4	3	4	98	" 302 - 101	" 294 - 15
"	"	4	4	4	110	" 294 - 459	" 302 - 794
"	"	4	5	4	52	" 315 - 52	" 315 - 118
(충 정 로 3 가 지 구)							
"	"	4	1	4	133 ^M	충정로 3가 3 - 140	충정로 3가 3 - 419
"	"	4	2	4	50	" 3 - 371	" 3 - 378
"	"	4	3	4	77	" 3 - 372	" 3 - 388
"	"	4	4	4	93	" 3 - 345	" 3 - 326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총 점
(북 아 현 5, 6, 7, 8, 9, 10 지구)							
변 경	소로	3	1	6	280 ^M	북아현동 1-1502	북아현동 1-872
(위치변경)	"	3	2	6	116	" 1-1476	" 1-943
"	"	4	1	4	84	" 1-1578	" 1-1502
"	"	4	2	4	194	" 1-1589	" 1-1001
"	"	4	3	4	26	" 1-1502	" 1-1519
"	"	4	4	4	16	" 1-1490	" 1-1069
"	"	4	5	4	82	" 1-1476	" 1-933
"	"	4	6	4	110	" 1-933	" 1-907
(홍 제 3 동 지 구)							
"	"	3	1	6	210 ^M	홍제동 266-258	홍제동 266-210
"	"	3	2	6	6	" 266-160	" 266-249
"	"	3	3	6	7	" 266-153	" 266-238
(미 아 7 동 지 구)							
변 경	"	3	1	6	600 ^M	미아동 387-772	미아동 387-868
(폐지)	"	3	2	6	420	" 837-714	" 857-865
"	"	3	3	6	400	" 837-143	" 852-657
"	"	3	4	6	150	" 852-260	소 3-5 교점
"	"	3	5	6	570	" 852-264	미아동 857-685
"	"	3	6	6	110	" 837-556	" 837-650
"	"	4	1	4	230	" 837-154	" 837-544
"	"	4	2	4	116	" 852-371	" 582-340
"	"	4	3	4	44	" 852-396	" 852-884
"	"	4	4	4	180	" 852-518	" 852-54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중 점
(미 아 8 동 지 구)							
변 경	소로	3	1	6	143 ^M	미아동 830 - 409	미아동 837 - 431
(폐지)	"	3	2	6	43	" 837 - 420	" 837 - 373
"	"	3	3	6	76	" 837 - 689	" 837 - 687
"	"	3	4	6	264	" 837 - 154	" 837 - 687
"	"	3	5	6	122	" 산108-5	" 837 - 379
"	"	4	1	4	100	" 837 - 455	" 837 - 512
"	"	4	2	4	106	" 837 - 457	" 837 - 480
"	"	4	3	4	80	" 837 - 453	" 837 - 449
"	"	4	4	4	33	" 837 - 379	" 837 - 687
"	"	4	5	4	19	" 837 - 687	" 837 - 687
(노 량 진 지 구)							
"	"	3	1	6	272 ^M	노량진동 202 - 181	노량진동 315 - 2
"	"	4	1	4	401	" 301 - 215	" 294 - 66
"	"	4	2	4	145	" 302 - 12	" 202 - 101
"	"	4	3	4	115	" 202 - 8	" 264 - 16
"	"	4	4	4	65	" 202 - 185	" 294 - 71
"	"	4	5	4	110	" 294 - 76	" 산 80
"	"	4	6	4	90	" 315 - 3	" 산 134
(충 정 로 3 가 지 구)							
"	"	3	1	6	27 ^M	충정로3가 3 - 260	충정로3가 3 - 262
"	"	4	1	4	35	" 3 - 378	" 3 - 394
"	"	4	2	4	50	" 3 - 318	" 3 - 400

103-7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종 점
변 경	소로	4	3	4	32 ^M	충정로 3 가 3 - 326	충정로 3 가 3 - 368
(폐 지)	"	4	4	4	54	" 3 - 410	" 3 - 345
"	"	4	5	4	109	" 3 - 331	" 3 - 401
(북 아 현 5 지 구)							
"	"	3	286	6	45 ^M	북아현동 1 - 1299	북아현동 1 - 1015
"	"	4	80	4	145	" A	" 1 - 1303
"	"	4	81	4	100	" 17 - 25	" 1 - 1303
"	"	4	82	4	13	" B	" 1 - 1303
(북 아 현 6 지 구)							
"	"	4	83	4	230 ^M	" 1 - 1055	" 1 - 1289
"	"	4	84	4	87	" 1 - 1106	" 1 - 1034
"	"	4	85	4	33	" 1 - 1117	" 1 - 1284
"	"	4	86	4	57	" 1 - 1049	" 1 - 1097
(북 아 현 7 , 8 지 구)							
"	"	3	288	6	88 ^M	" 1 - 1215	" 1 - 876
"	"	3	289	6	165	" 195 - 1	" 1 - 894
"	"	4	87	4	138	" 196 - 8	" 1 - 933
"	"	3	290	6	124	" 1 - 1213	" 1 - 839
"	"	4	88	4	39	" 1 - 859	" 1 - 853
(북 아 현 9 , 10 지 구)							
"	"	3	291	6	135 ^M	" 196 - 4	" 1 - 979
"	"	4	89	4	127	" 1 - 944	" 1 - 1055
"	"	4	90	4	168	" 1 - 953	" 1 - 97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 장	시 점	종 점
변 경	소로	4	91	4	74 ^M	북아현동 1-979	북아현동 1-1292
(폐지)	"	4	92	4	60	" 1-995	" 1-1014
(홍 계 3 동 지 구)							
"	"	3	225	5	200 ^M	홍계 3 동 351	홍계 3 동 274-69
"	"	3	226	5	7	" 328	" 329
"	"	3	227	5	8	" 296	" 296
(냉 천 지 구)							
"	"	3	292	6	47	냉천동 74-3	냉천동 74-121
"	"	4	93	4	25	" 74-58	" 74-127
(천 연 지 구)							
"	"	4	94	4	77 ^M	천연동 127-147	천연동 127-45
"	"	4	75	4	110	" 126-30	" 127-136
"	"	3	293	6	120	" 127-9	" 127-151
"	"	4	96	4	14	" 127-9	" 126-18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지 적 승 인

1. 건설부고시 제 131 호 (76.8.21)

로 결정고시된 아파트지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

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1 조 11 항 51 호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
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
장소)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2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지적승인조서		
지 구	위 치	면 적 (㎡)
아파트지구 (잠실지구)	신천, 잠실, 석촌, 송파, 풍납동일부	2,458,000
" (반포지구)	반포, 잠원, 서초동일부	5,508,000
" (여의지구)	여의동일부	590,000
" (이촌지구)	이촌동일부	160,000
" (압구정지구)	압구정동 일부	1,191,000
" (청담지구)	청담동 일부	367,000
" (도곡지구)	도곡동 일부	728,000
" (이수지구)	동작동, 방배동일부	83,000
" (서빙고지구)	서빙고, 용산, 이촌동일부	814,000
" (화곡지구)	내발산, 화곡동일부	292,500
" (원효지구)	원효로 4가 한강로 3가일부	102,000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57 호</p> <p>1976년도. 제3회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6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p>	<p>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9.2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자 춘</p>

회 계 별	예 산 액
총 액	218,933,934 천 원
일 반 회 계	137,956,867 "
특 별 회 계	80,977,067 "
주 택 비 특별회계	19,584,240 "
토 지 구 획	11,711,830 "
하 수 처 리	2,838,333 "
전 설 자 재	1,487,300 "
유 료 도 로	1,155,775 "
시 민 회 관	4,900,046 "
청 소 비	6,491,472 "
재 개 발	1,787,000 "
재 해 구 호	159,443 "
수 도 사 업	24,297,591 "
지 하 철	6,564,037 "
<p>◎ 서울특별시고시제 258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및 지 적 승 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p>	<p>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 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 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10.4</p> <p>서 울 특 별 시 장</p>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학교 (고등학교)	강남구압구정동 199-2 외 3	17,471	
변경	"	강남구압구정동 182 외 5 일대	18,100	
※별첨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59 호</p> <p>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제 37 호 (76.3.27) 로 변경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p>		<p>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10.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조서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녹지 지역 - 주거 지역	성동구구의동일대	425,000	한강매립지	
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흥군철산리 하안리 일대	4,751,000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60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p> <p>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학교)</p>		<p>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0.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 설	학 교 (양석여자중학교)	강남구천호동 9 - 1 의 15 필지	21,712	
	학 교 (영락상업고등학교)	봉천동산 174 의 12 의 2 필지	8,215	
	학 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홍제동 38 의 11 필지	44,620	
	학 교 (중앙대학교)	관악구흑석동 221 의 25 필	113,298	

※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1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
인 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76.4.21) 로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공고제 163 호 (76.7.20) 로 실시계획공람공고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본사업실시에 따른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 83 조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의내용							
지 번		지 목		평 수		비 고	
휘경동 42-2		구 거		8 평			
휘경동 42-4		"		178 평			
계				186 평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설국 하수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1976. 9. . . .</p> <p>서울특별시장</p>				<p>실시계획인가내용</p> <p>1. 사업시행의 위치 : 동대문구 휘경동</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문-휘경동간 간선하수도공사</p>			
3. 사업의 규모							
명 칭	구 분	단 위	연 장	규 격		비 고	
하수도	암거	m	157	B = 3.5m H = 3m 3련			
"	암거	m	30.5	B = 4m H = 3m 2련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p> <p>착공 : 76.4.16</p> <p>준공예정일 : 76.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p>				<p>소재지</p> <p>별첨내역참조</p> <p>7. 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내역참조</p>			

인 가 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문~휘경동간 간선하수도 공사	
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휘경동 55-3~휘경동 34-13 간				3. 사업 규모	
명 칭	구 분	단 위	연 장	규 격	비 고
하수도	암 거	m	157	B=3.5m H=3m 3련	
"	"	m	30.5	B=4m H=3m 2련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 261 호 6. 사업기간 : 76.4 ~ 76.12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내역참조 위와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6. 9.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건)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 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 계약 설계도서 (명면도) 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준공검사를 필한후 종래의 공공시설 (구거부지) 은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내 용					
지 번	지 목	명 수	비 고		
동대문구 휘경동 42-2	구 거	8 명			
" " 42-4	"	178 명			
계		186 명			

〈 별첨 1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휘경동	34-10	대	213평	34-60	대	17 평	상봉동 410	김 정 환
2	"	34- 4	"	68	34-61	"	11	휘경동 35-5	정 태 홍
3	"				34-63	"	2		
3"	"	34-44		83				휘경동 35-5	정 태 홍
4	"	61-1	"	390	61-3	"	95	강원도정선군사북면 사북52 산 147-3	동원산업개발
5	"	39-31	"	32	39-74	"	10	한강로1가 65-94	정 충 근
6	"	39- 4	"	25.4	39-75	"	6.8	휘경동 219-2	전수연의2인
7	"	39-40	"	21.4	39-76	"	21.4	"	"
8	"	39-41	"	27.5	39-77	"	0.6	"	"
9	"	39-34	"	25	39-78	"	8	"	"
10	"	53-1	"	7	53-40	"	6.4	휘경동 53-1	최 병 국
11	"	53-36	"	48	53-39	"	17	휘경동 204	안 달 호
12	"	53-28	"	27	53-41	"	4	"	"
13	주소지불명	55- 2	"	97	55-6	"	37	효자동 175-7 안국동 63-1	김 회 옥 김 회 관
14	"	55-1	전	17	55-5	"	16	국 유 지	국 유 지
계		14필지		1,081.3	5 필지		285.2		

〈 별첨 2 〉									
건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휘경동	61-1	세멘 부 와 죽	39.20	61-1	세부 와 죽	2.40평	강원도정선군사복음사북 5리 산147-3	동원한좌 주식회사
2	"	39-31	연 와 죽	21.11	39-31	연 와 죽	4.10	휘경동 39-31	구태희
3	"	39-4	"	20.98	39-4	"	5.10	휘경동 39-4	안종선
4	"	39-40	"	14.72	39-40	"	14.72	휘경동 39-40	박종택
5	"	39-41	"	19.00	39-41	"	0.60	휘경동 39-41	천수연
6	"	39-34	"		39-34	"			최병국
6	"	53-1	"	20.00	53-1	"	7.55	휘경동 53-1	지하실
7	"	53-36	"	22.65	53-36	"	4.58	휘경동 53-36	고재규
8	"	53-28	연 와 스 라 브	18.45	53-28	연 와 스 라 브	1.50	휘경동 53-28	김순환
계		9동		176.11	8동		40.55		

◎서울특별시고시제 26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지적일부 변경 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62.12.8)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0. 6

서울특별시장

○ 지적일부 변경조서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중로	2	3	15m	600m	덕수궁남쪽	신문로 2가	서소문동31일대 일부변경
변 경	"	2	3	15m	600m	"	"	

○ 지적일부 변경조서 (광장)

구분	광 장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정동광장	중구정동 34-2 일대	1,525	지적일부변경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06호 (76. 8.27) 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23 조제 5항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허가 이를 공 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0. 2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허가내용

도시계획사업	명 칭	사 업 시 행 지	면적(㎡)	시 행 자	준공년월일
도시계획사업 (학교)	계룡국민학교	강남구 마천동 183-1 외 6	10,668	서울특별시	실시계획인가
	광희중학교	성동구 응봉동 216 외 8	4,298	교육위원회	일로부터
	공업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100 외 47	99,637		1년6개월

<p>◎ 서울특별시공고제 23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신림지구청산금납입 고지서공시송달</p> <p>청산금 납부고지서를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 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 조제 3 항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p>	<p>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10.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주소 또는 거소 성명 : 관악구 신림동 1167 이상회의 158 명 별첨조서참조</p> <p>2. 구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6년도 수기분</p> <p>가. 납입장소 : 당시도시정비국도시행정과 나. 납부기간 : 76.10.15</p>
---	--

채 납 자 조 서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2	신림	570-5	73.10	2	67,854	신림동 1167	이 상 회
16	"	571-2	94.20	1.20	65,405	" 1138	황 인 화
17	"	572-2	216.20	6.10	298,759	" 1121-3	
24	"	566-5	132.80	1.40	103,205	" 산 243	
33	"	564-9	100.50	0.50	41,876	" 산 203-30	임 형 재
38	"	" 19	31.40	2.40	107,997	" 산 256	이 춘 자
41	"	" 43	47.60	3.10	110,245	" 203-28	
45	"	" 25 29	62.80	2.80	99,576	" 203-44	
58	"	563-27	81.10	1.10	50,083	" 산 203-47	김 종 길
77	"	" 21 7	258.10	2.90	114,289	" 1060	이 삼 달
83	"	569-25	210.40	3.80	184,854	" 1044	

수납 번호	물 전 지			과도평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94	신 립	561-7	210.90	2.10	87,441	신림동 796	라 동 성
120	"	547-1	204.70	2.10	118,114	철암동 136	김 희 철
121	"	"-2 7	1067.20	0.20	8,346	신림동 565-2	"
122	"	548-10 8	254.20	7.50	269,640	철암동 136	"
123	"	"-9	63.20	0.40	18,618	신림동 565-13	이 영 옥
136	"	541-1	149.70	1.20	56,611	" 567-2	김 희 철
137	"	541-25 536-8	665.10	5	203,715	" 569	"
152	"	543-5	43.30	0.70	30,219	" 599	김 홍 순
153	"	"-6	42.30	17.10	1,763,728	" 719-6	박 동 희
154	"	"-8	22.90	12.80	1,244,774	" 790-14	김 홍 순
155	"	"-9	48.70	19.30	770,012	" 791-17	이 영 균
166	"	"-26	58.90	2.70	141,617	" 791-33	김 혜 점
185	"	539-6	63.20	2.20	73,794	" 572-5	최 연 영
206	"	537-4	43.80	0.90	32,846	" 573-17	박 영 하
208	"	"-10	54.30	15	591,210	" 507-10	김 번 춘
213	"	"-39	"	1	33,688	" 575-28	최 창 길
223	"	538-1	104.30	5.90	482,572	" 538-4	
243	"	592-4	99.40	1.40	63,119	" 575-44	김 희 철
249	"	"-14	29.80	3.50	153,198	" 573-24	이 규 한
250	"	"-17	159.90	1.20	56,624	" " -27	김 희 철
253	"	"-24	14.60	0.50	17,805	" " -42	신 효 기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255	신 립	521-3	43.50	0.50	19,236	신림동 521-3	
256	"	"-4	44.50	1.50	55,570	" "-4	
257	"	"-5	14.50	0.70	26,431	" "-5	
276	"	"-31	31.20	0.10	3,765	" 531-31	허 혜 경
292	"	528-8	55.40	0.60	25,860	" 916-7	최 범 식
303	"	"-19	55.10	1.10	48,199	연희동 산 5	최 주 은
309	"	524-12	70.70	0.70	29,197	신림동 536-4	조 병 기
313	"	"-21	10.70	1.20	45,763	경기화성반월월암 66	이 재 설
320	"	"-10	87.40	2	75,944	신림동 531	윤 귀 중
327	"	527-7	59.20	1	47,657	" 580-3	최 재 선
332	"	526-6	130.20	5.20	480,360	신림동 산 195-10	한 창 기
347	"	549-7	74.30	0.30	12,359	" 565-9	김 두 리
351	"	535-24	40.50	0.50	17,824	" 546-4	박 정 수
352	"	534- ²⁶ / ₅	66.40	1.20	42,777	" "-5	전 현 숙
365	"	533-4	47.70	1.70	71,309	" 533-4	
369	"	520-17	76.20	0.60	20,518	" 541-9	김 정 근
372	"	"-16	175.30	1.80	59,411	" "-7	목 매 상
409	"	502-19	48.30	1.30	47,074	" 502-19	조 형 래
410	"	"-8	53.60	3.60	171,471	" "-8	조 준 명
415	"	"-4	35.40	0.40	18,678	" 89-128	김 주 삼
421	"	"-32	35.50	0.50	23,815	" 524-12	윤 완 지
422	"	"-35	50.90	0.90	40,116	대방동 236-274	윤 성 노
423	"	503-15	13.40	0.40	14,319	" 523-6	김 선 태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434	신 립	504-4	143.20	2.90	142,448	신림동 504-4	신 종 덕
447	"	511-29	12.30	0.30	11,304	" 527-16	이 정 영
355	"	512-1	69.10	0.60	31,515	" 537-6	김 영 희
356	"	"-3	65	2	83,962	" "-16	최 오 성
360	"	"-11	54.40	4.40	198,096	" "-15	"
358	"	"-5	175.30	0.30	121,132	노량진 232-246	이충원의1
376	"	509-17	62.30	1.50	50,260	신림동 529-22	유 현 결
379	"	" ²⁴ / ₂₃	347.30	3.30	166,085	" 528-2	유 현 결
384	"	531-26	44	0.20	7,789	" 531-26	
387	"	"-31	13.30	0.10	3,744	" 531-31	
389	"	"-34	57.40	0.40	50,328	" 531-34	이 경 제
393	"	491-1	51.20	0.20	10,442	" 491-1	
420	"	"-19	60.60	0.60	21,485	" 463-1	김 두 철
403	"	490-1	57.20	0.80	37,720	" 469-14	문 춘 예
424	"	489-8	81.40	1.40	59,844	" 489-8	
429	"	"-23	45.60	0.60	27,158	" 489-23	하 동 원
432	"	506-1	146.50	1.30	61,126	" 463-2	이 중 재
436	"	"-8	70.10	1.20	44,156	" 448-23	이 중 원
438	"	"-11	53	3	128,238	" 448-17	배 후 식
445	"	"-27	8.20	0.20	7,512	" 460-12	
469	"	507-17	51.20	2.40	97,492	" 450-15	신 경 환
472	"	"-20	60.80	1.30	60,278	" 488-1	김 상 배
474	"	"-24	113.80	0.70	53,126	" 507-24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480	신 립	507-33	51.40	0.20	7,033	신림동	507-33	이 상 덕
485	"	487-1	60.40	0.40	25,842	"	487-1	이 학 철
496	"	"-17	51.20	1.20	60,898	"	448-13	김 윤 철
499	"	"-20	171.10	1.50	69,345	"	445-10	김 창 일
504	"	"-16	42.50	1	43,376	"	448-2	윤 성 섭
520	"	485-1	56.2	2.2	116,802	"	479	박 봉 규
522	"	"-4	70.4	0.4	16,660	"	479-6	홍 승 권
521	"	"-3	54.8	4.8	192,523	"	"-8	"
536	"	"-24	28	5.9	250,673	"	474-20	신 애 지
547	"	483-1	53.2	2.4	125,707	신길동	402-5	서 정 구
551	"	"-6	45.6	1.1	46,373	신림동	480-64	오 홍 태
563	"	484-14	119.4	30.4	1,812,569	"	445-129	이 용 철
572	"	"-25	51	5	248,700	"	480-26	장 석 현
576	"	"-34	43.8	1.2	50,907	"	480-34	김 종 회
599	"	468-20	52.7	0.7	30,974	"	481-25	신 현 구
615	"	467-22	50.5	0.5	18,584	옥인동산3 Apt 333 호		황 일 정
617	"	"-25	51.1	1.1	54,015	신림동산	185-17	김 기 영
644	"	466-16	38.5	0.8	40,572	신림동	445-82	권광실외
711	"	463-13	29.8	13.4	447,131	아문동	255-141	김 종 근
705	"	"-7	51.5	15.5	472,536	신림동	608-5	유 진 학
741	"	"-77 52	55.2	1.1	41,856	"	445-6	표 창 근
730	"	"-29	41.6	1.3	47,274	"	488-45	성 용 학
764	"	534-5	166.7	26.2	951,139	"	547	최 숙 희

수납 번호	물 전 지			과도평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769	신림	518-3	60.6	0.6	27,640	신림동	516-27	조 북 여
780	"	" - 18	135.7	4.4	194,251	"	549-4	김 병 주
193	"	539- 18	75.2	0.2	12,129	"	789-8	정 만 복
201	"	536- 13	21.5	1	38,272	"	573-47	천 영 식
203	"	" - 15	49.3	0.5	10,767	"	573-49	김 순 득
218	"	537- 28	101.40	4.90	194,118	"	575-5	제 정 무
260	"	521- 15	14.90	0.80	26,431	"	545-6	배 문 옥
331	"	526- 5	84.50	1.50	61,522	공항동	274-68	이 호 재
378	"	519- 12 21	44.10	6.30	244,566	석관동	281-5	김 태 수
370	"	520- 22 23	43.50	0.20	7,435	신림동	517-3	윤 상 현
583	"	481- 16	13.1	3.2	123,625	"	418-11	문 병 준
587	"	489- 5	111.2	0.3	18,817	"	481-6	이 영 자
765	"	534- 2 16	123.20	0.60	24,007	"	808-2	박 승 립
806	"	517- 8	48.5	3.5	130,025	"	517-8	이 혁 재
810	"	" - 12	81.6	8.6	616,921	"	516-38	박 남 열
823	"	" - 50	51.3	0.3	21,612	"	516-45	김 세 우
837	"	516-24	41.2	1.2	43,735	"	518-33	허 춘 분
844	"	499-38	49.5	1.5	82,498	"	501-7	김 영 옥
866	"	501- 16 17	56.1	0.5	18,164	"	521-52	추 정 준
870	"	" - 22 36	51.6	0.6	20,389	"	521-64	장 화 부
877	"	498- 6	61.4	0.4	16,624	"	501-195	김 정 연
910	"	" - 49	45.9	0.4	17,832	"	501-150	정 창 식
915	"	" - 54	55.4	0.4	20,615	"	501-144	이 영 란

수납 번호	불 건 지			과도평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916	신림	498-55	49.8	0.3	16,398	신림동 501-1	박 상 욱
945	"	502-2 494-5	236.7	1.3	63,000	" 510-4	박 종 환
959	"	493-15	20.5	1	35,916	" 493-15	
966	"	492-7	61.4	0.1	4,415	안양시안양동 784-12	김범하외 1
970	"	476-14	50.9	1.4	48,872	신림동 496-12	이성호외 2
971	"	"-15	50.2	0.7	24,436	" "-13	"
972	"	"-16	49.9	0.4	13,963	" "-14	"
973	"	"-21	49.7	0.2	7,770	" "-19	"
974	"	"-22	49.7	0.2	7,770	" "-20	"
998	"	478-39	52.8	3.3	133,369	" 494-18	박 성 원
1001	"	479-7	12.3	1.6	56,593	" 479-7	
1002	"	"-8	37.8	0.3	14,059	" "-8	
1005	"	"-14	65.5	1.5	78,012	" 508-4	이순태외 1
1023	"	474- ⁹ / ₁₀	83.6	1.6	61,763	" 474-10	
1031	"	473-25	54	1	40,676	" 412-437	김범철외 7
1035	"	472-10	22.9	0.3	7,074	" 485-30	이동기외 1
1036	"	"-11	35.5	0.2	8,642	" "-31	"
1037	"	"-13	43.8	0.2	6,785	" "-33	"
1034	"	"-9	44.8	0.7	30,247	" "-29	"
1044	"	"-35	45.2	0.3	10,990	" "-35	"
1045	"	"-36	40.3	0.4	13,859	" "-34	"
1046	"	471-1	52.2	0.2	9,848	" 471-1	박 명 재
1057	"	470-4	12.7	1	35,371	" 482-24	이 교 성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제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1064	신림	470-16	108.2	3	175,176	신림동 486-13	조 환 제
1065	"	" -17	134.5	0.4	20,777	" " -5	채 중 연
1079	"	459-7	44.2	0.3	10,598	" 490-5	박 창 기
1085	"	" -15	46.9	1.6	58,785	" 491-51	이 옥 휘
1094	"	" -37	49.4	1.3	60,632	" 459-37	장 영 식
1098	"	460-13 1	45.4	0.4	20,231	" 460-1	성 원 석
1103	"	" -18	58.6	4	150,536	" 489-18	이 경 자
1113	"	462-3	188.5	0.9	35,615	" 415-2	"
1114	"	" -9	72.3	0.3	15,166	" 486-2	임 원 영
1118	"	" -4 5	711.8	17.8	953,172	" 488	김 상 배
385	"	515-7	46.3	3.3	121,944	" 519-5	정 상 태
443	"	511-26	17.3	0.3	11,757	" 438-15	김 점 령
662	"	466-42	34	0.6	23,898	" 445-97	노 영 호
944	"	494-14	193.6	0.1	4,069	" 510-14	민 병 숙
509	"	486-23 24	44.2	0.65	23,844	이촌동 296	김 경 구

◎서울특별시공고제 23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77호(62.12.8)
로 고시된 무교로(시청후문~무
교로) 확장공사의 구간내의 저
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34조의 규정에 따
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9.30

서울특별시장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의 위치 : 무교로 (시청-무교로)</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무교로 (시청후문-무교로) 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 20 나. = 280</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10.20 - 77.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다음</p>
<p>건 물 조 서</p>	

순 위	소재지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지 (수용대장)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무 교	35-2	목조 외집	23				사직동 262-91	박 승 건
	"	34	"	18			"	"	박 상 협
	"	61-1	연외조	49				연희동 200-9	김 명 화
	"	44-3	"	9.4				통의동 35-34	코오롱엔터 프라이스 주식회사

이 동 지 조 서 (부)

서 기 19 년 월 일 처

토지 소재		지 번	지 목	지 적	등 급	소 유 자	
구	동					주 소	성 명
중	무 교	35-3	대	10.1	84	충무로 1가 21-10	선양산업사
"	"	35-4	"	9.2	84	사직동 262	박 상 협
"	"	34-1	"	4.4	84	"	"

토지 소개		지 번	지 목	지 적	등 급	소 유 자	
구	동					주 소	성 명
중	무 교	33-3	대	7.1	84	창신동 197-6	박 순 원
"	"	32-5	"	2.1	84	제동 84-23	주 식 회 사
"	"	21-8	"	4.4	84	21-3	남강건설회관
"	"	21-7	"	3.4	84	노량진동 230-14	공 동 산 업 사
"	"	19-1	"	8.5	84		주 식 회 사
"	"	18-4	"	2.3	84	18	유 영 우
"	"	70-3	"	1.5	84	장충동 1가 89-1	서울특별시
"	"	67-1	"	0.8	84	"	이 해 범
"	"	66-1	"	1.3	84	"	이 규 훈
"	"	65-1	"	4.2	84	65	"
"	"	63-5	"	2.5	84	군정동 98-5	조 칠 봉
"	"	61-3	"	2.9	84	연희동 200-9	곽 유 지
"	"	62-1	"	2.4	84	청파동 3가 108-3	김 명 화
"	"	45-1	"	16.1	84	통의동 35-34	신 상 철
"	"	44-3	"	6.6	84	"	한국나이롱사
"	"	18-3	"	4.5	84	18	주 식 회 사
"	"	13-4	"	15.3	84	신당동 333-128	코오롱에터프라이스 주식회사
"	"	9-5	"	1.1	84	신길동 95-151	이 해 범
"	"	8-1	"	1.9	84	명륜동 1가 36-2	손 술 곤
"	"	6-1	"	2.4	84	도동 2가 105-9	권 영 선
"	"	1-7	"	0.4	82	통의동 108	김 덕 범
							송 재 옥
							최 점 순

<p>◎서울특별시공고제 237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p> <p>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홍능-산업대학 입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의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 10. 4. 서울특별시장</p>	<p>공람개요</p> <p>1. 사업장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의 3-819번지</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홍능-산업 대학 입구간 도로 개설 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B = 25 m 나. L = 750 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6. 9. 27 - 77. 12. 2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 인 주소성명 : 별첨.</p>
---	---

수용토지지번조서

순 위	당 초 지 번	수 용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청량리동 819	청량리동 819	대	60	청량리동 445	진재호	
2	" "	" "	"	30	" "	문중채	
3	" "	" "	"	30	" "	이종엽	
4	" "	" "	"	30	" "	채은환	
5	" "	" "	"	50	" "	민경란	

수 용 건 물 조 서							
순 위	소 재 지	구 조	수용접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청량리동 19-13	목조외집	32.3	전농동 589-6	이진하		
2	" "	"	22.3	" "	"		
3	" "	"	1.3	" "	"		
4	" 산 1-33	"	19	청량리동 26	이보남		
5	" "	"	24.4	" 산 1-33	김송재		
6	" "	"	25.7	" "	홍재공		
7	" 25-11	"	9	" 199	전주찬		
8	" 25-10	"	14.7	" 25-10	김은규		
9	" 25-9	"	19.7	" 25	오경덕		
10	" 25-8	"	32.6	" 25-8	최성학		
11	" 25-7	"	12	" 25-7	박삼성		
12	" 산 1-34	"	7.3	" 산 1-34	이영무		
13	" 산 1-33	"	6.3	" 산 1-33	변춘찬		
14	" 51-4	"	12.9	" 51-4	주재환		
15	" "	"	11.8	" "	김택영		
16	" 51-6	"	0.6	" 51-6	이성기		
17	" 산 1-33	"	26.7	" 산 1-33	정병화		
18	" 51-15	"	1	" 51-15	한충록		
19	" "	"	10.5	" "	이순복		
20	" 51-1	"	23	성동구 -70	동양정밀공업(주)		
21	" 51-1	"	26.5	" 51-1	김승환		
22	" "	"	13.4	" "	박원실		
23	" 산 1-1	"	22.7	" 산 1-1	손석하		
24	" 195	"	9.15	" 195	이철수		
25	" 819	"	18	" 445	진재호		
	계	25 동	402.95				

102-12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9호

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08호 (76.5.7)

로 실시 계획 인가된 바 있는 당시관내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송지구 주택공사 단지) 이 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 1항 및 동법 제 46조 제 2항, 제 3항의 규정과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0. 4.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송동 1의 13의 1필지

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송지구 주택공사 단지)

3. 준공면적 : 69,651.30㎡
(인가면적 : 69,925㎡)

4. 사업시행자 : 대한 주택공사
사장 양택식

5. 사업기간 : 착공 76. 5. 7.
준공 76. 9. 1.

6. 준공도면 : 별첨 인증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240호

환지 계획변경 인가 및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7호 (76. 9. 4) 로 공람 공고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74년도 및 75년도에 시행한 아현 2, 고척 및 서빙고구역내 일부 환지 계획변경에 대한 권리면적 변경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 86조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제 5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환지 계획변경 인가하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36

2.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및
관할구청 시민홀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
고 있으며,

3.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 드립니다.

1976. 10. 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

환지계획일부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
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제 55조, 제 33조및 행정권
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 공고한다.

2. 환지계획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은 이공고로 가름한다.

1976. 10.

서울특별시장

①사업명 : 신림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②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일부토지

③필지수 : 4 필.

④변경조서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

사 령

◎ 1976.10.2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중국

초임호봉에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종혁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허용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에 급함.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경환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박영석
초임호봉에 급함.		2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조남형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상철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계정근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구환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진우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동기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시설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태수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진중국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주택개량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서광교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한금주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주택정비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만영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세진
초임호봉에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치수과 근무를 명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상환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함금열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정희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김영근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시립운동장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평호	도시계획과파견 (76.10.12 ~ 76.12.31)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홍충식
중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재탁	용산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성락관
용산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수태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한기홍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이관영	마포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이성태
성동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손기석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한만구
도봉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유해근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손대호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남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종기 2호봉을 급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권달중 초임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남수 초임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오장환 초임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채병철 초임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유진성 초임호봉을 급함.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원규 초임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임남규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무한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정호 초임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기철 초임호봉을 급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윤화용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광식 도시계획과파견 (76.10.2~76.12.31)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고래규 초임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이병창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남순 초임호봉을 급함. 동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전 종 안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이 옥 화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성 덕 기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이 수 기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이 두 석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최 승 균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전기 지원보시보	허 건 우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정 영 탁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지방전기 지원보시보	채 한 석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이 영 길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방농림 지원보시보	이 용 희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최 영 태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김 광 진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이 석 훈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심 재 우	지방보건 지원보시보	양 복 기
초임호봉을 급함.		초임호봉을 급함.	
종로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의 지원보시보	김상래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백중현
초임호봉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의 지원보시보	유재기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고승식
초임호봉 근무를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의 지원보시보	이홍우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김덕수
초임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의 지원보시보	안경수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한원희
초임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임석원	지방토목 지원보시보	김원수
초임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급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주영석	지방토목 기사	박계병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손장우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강성태	지방토목 기원	이종두
초임호봉을 급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동부건설	
지방기계 지원보시보	이홍범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강영수
초임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은 평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오세진	차동차정비 사업소	지방기계 기사보	유동수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은 평 지방토목 기사보	송인목	강남구	지방전기 기사	전병옥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은 평 지방전기 기사보	이현무	구획정리과	지방토목 기사	최백규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도로시설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기계 기사보	유인상	용산구	지방토목 기원	김봉식
도로보수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송주영	◎ 1976.10.7		
주택개량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병원장	지방의무부 기감	이영일
동대문구 지방건축 기사보시보	이동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주택개량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장	지방의무부 기감	신현삼
지하철본부 지방전기 기사보시보	장영종	영등포병원장	근무를 명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의약과장	의무기정	최한상
용산구 지방토목 기사보	이종철	서대문병원장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보건소장	지방의무 기정시보	윤명순
관악구 지방토목 기사보	장광국	의약과장직무대리 (지방의무기정)	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